##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

발의연월일: 2024. 5. 30.

발 의 자:박 정·정성호·어기구

김병기 · 김병주 · 임오경

안규백 · 김정호 · 윤후덕

허 영·김남근·박홍근

김영화 • 박지혜 • 민병덕

강유정 · 소병훈 · 송기헌

의원(18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내 소비 결과가 다시 지역에 돌아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끄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. 그러나지난해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나 혜택이 축소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인용에 불안정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역 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재정지원을

요청할 경우 이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지원 신청을 받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	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
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	지원) ①
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	
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	
발행・판매・환전 등 운영에	
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	<u></u> ਨੋਖ
<u>할 수 있다</u> .	<u>야 한다</u> .
<u>&lt;신 설&gt;</u>	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
	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재정지원
	신청을 받아 다음 연도 예산에
	<u>반영하여야 한다.</u>
<u>②·③</u> (생 략)	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
	과 같음)